

		<h1>보 도 자 료</h1>			
		<b>배포일시</b>	<b>2020. 2. 13.(목)</b> <b>총 8매(본문5)</b>		
<b>담당 부서</b>	공공주택지원과	<b>담당자</b>	·과장 최아름, 사무관 곽인영, 주무관 박세연 ·☎ (044) 201-4531, 4479, 4535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		·처장 강기관, 부장 최은하, 차장 강은주 ·☎ (055) 922-3360, 3402, 3397		
<b>보 도 일 시</b>		2020년 2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

- 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정기모집(한국토지주택공사) -

[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다자녀 유형 신설)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 (개선전)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ㄱ씨 부부는 방 두 개 이상의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인근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 (개선후)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지원금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교 인근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개선전) 소득하위 44%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 입주 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 (개선후) 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20년 다자녀·고령자·일반 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기모집공고 물량(단위 : 호) >

합 계	다자녀	고령자	일반*
7,540호	1,500	3,000	3,040

\* 경기도시공사(일반 3,000호, 2월 3일 공고), 인천도시공사(일반 700호, 2월 7일 공고)는 기 모집 중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일반 2,800호) 등은 2월 중 모집공고 예정

□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 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 다자녀·고령자·일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고 가세요! ]**

**< 입주자격 기준 >**

구분	1순위	2순위
다자녀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평균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은 평균소득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등

**< 다자녀 유형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신설) >**

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
① 자녀수 (5)	가. 4인 이상 : 5점 나. 3인 : 3점 다. 2인(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적용) : 1점
② 현 거주지 상태 (2)	가. 전용면적 26㎡ 이하이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다른 지하인 경우 : 2점 나. 전용면적 26㎡ 이하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다른 지하인 경우 : 1점
③ 필수적 설비기준 (2)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미 구비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미 구비 : 1점

**< 고령자·일반 유형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중전과 동일) >**

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
① 경제활동 참여기간(3)	24개월 이상(3점), 12~24개월 미만(2점), 12개월 미만(1점)
② 해당지역 거주기간(3)	5년 이상(3점), 3년~5년 미만(2점), 3년 미만(1점)
③ 부양가족 수(3)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미성년 자녀(최대 3점), 65세이상 직계존속(1점), 중증장애인(1점) 부양시 별도 가점
④ 청약저축 납입회차(3점)	24회 이상(3점), 12~24회 미만(2점), 6회~12회 미만(1점)
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4점)	모두 미 구비 4점, 어느 하나 미 구비 2점
⑥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5점)	80% 이상(5점), 65~80% 미만(4점), 50~65% 미만(3점), 30~50% 미만(2점)

□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 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4천만 원, 4자녀 - 1억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限)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별 지원 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

구분	지원 한도액			입주자 부담 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다자녀	1억 2천만 원	9천 5백만 원	8천 5백만 원	지원한도액의 2%	○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고령자·일반	9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지원한도액의 2~5%	

\*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

-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20년 다자녀·고령자·일반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호수(내공급분)**

행정구역	다자녀 (154개 시·군·구)	고령자 (158개 시·군·구)	일반 (158개 시·군·구)
합 계	1,500	3,000	3,040
서울	212	567	533
인천	100	193	195
경기	347	510	516
부산	91	339	343
대구	62	187	190
광주	81	107	109
대전	57	68	69
울산	20	37	37
세종	8	12	13
강원	39	93	95
충북	51	105	107
충남	48	108	109
전북	112	170	173
전남	56	106	108
경북	74	193	195
경남	110	190	192
제주	32	15	56



누구나 꿈을 키우고  
누구나 꿈을 찾는 집-

# LH다자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2020년 2월 26일(수)~3월 3일(화)까지

※ 또 다른일은 신청 접수되지 않음

## 2020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공급분수** 1,500호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 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사람
- 신청유형** [1순위]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연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LH다자녀전세임대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신세입리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연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 지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 임대하는 주택

- 임대보증금** 지원연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이하 차감)
- 임대료** 전세임대보증금에 대한 LH차임액에 대한 연 1~2% 이하 (이하 차감)
-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입주신청은 LH방문신청(<https://apply.lh.or.kr>)  
\*입주자 모집공고문, 홈페이지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발표** 선정일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 후 LH방문신청(<https://apply.lh.or.kr>) 게시 및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 우리 이웃의 삶이 더 따뜻해지도록 -

LH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기존주택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연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 2020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급호수	6,040호 (일반 3,040호, 고형자 3,000호)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기간	2020년 2월 26일(수) ~ 3월 3일(월) ※ 모: 월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유형	[일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급가구, 장애인 [고형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LH 신청인 내방신청(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리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연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입주자별표	신청일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내방신청(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게시 및 지역별별표 1일 발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연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2억원) [임대료] 전세임대서 임대보증금률 한.LH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하 (2억원)	문의처	☎ LH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복지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